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시행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·발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지도교수”를 “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”로, “농가”를 “농가 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(소·말·돼지·염소·사슴·닭·오리를 말한다)”를 “(소·말·돼지·염소·사슴·노새·당나귀·닭·오리·메추리·꿩·꿀벌을 말한다) 및 수생동물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,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

사용하는 행위

제2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3. 4. (생 략)

제13조(동물병원의 시설기준) ①
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
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:
진료실·처치실·조제실, 그
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
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. 다만,
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
(소·말·돼지·염소·사슴·
닭·오리를 말한다)에 대한
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
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
아니할 수 있다.

2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0조의2(과잉진료행위 등) 법
제32조제2항제6호에서 “과잉진
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
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
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동물병원의 시설기준) ①

-----.

1. -----

--(소·말·돼지·염소·사
슴·노새·당나귀·닭·오리
·메추리·꿩·꿀벌을 말한
다) 및 수생동물-----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과잉진료행위 등) 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
제42조제1항, 같은 법 제85조

